

# ORIGIN CASE

Vol. 9



- Case 1 이동식 에어컨
- Case 2 스마트 워치
- Case 3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 Case 4 프린터
- Case 5 블라인드
- Case 6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7601.20호)
- Case 7 음식물 처리기 (제8509.80호)
- Case 8 금속 머리띠
- Case 9 대나무 선반 패널 (제9403.99호)
- Case 10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제3005.1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 CONTENTS

Case 1.	이동식 에어컨	1
Case 2.	스마트 워치	5
Case 3.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11
Case 4.	프린터	16
Case 5.	블라인드	21
Case 6.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7601.20호)	25
Case 7.	음식물 처리기 (제8509.80호)	29
Case 8.	금속 머리띠	34
Case 9.	대나무 선반 패널 (제9403.99호)	38
Case 10.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제3005.10호)	42





case  
1

## 이동식 에어컨

### 요약

사례명	<b>이동식 에어컨</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2263 (2021.11.12.)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 콘덴서, 증발기 등의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태국에서 태국산 부품들과 함께 냉각 유닛을 완성하고 다른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이동식 에어컨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b> • 미완성 상태로 수입된 중국산 콘덴서와 증발기는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되는 공정을 통해 완전한 냉각 유닛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며, 태국에서 생산된 냉각 유닛이 이동식 에어컨의 본질을 부여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sup>1)</sup>

**사 례 명** [이동식 에어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2263 (2021.11.12.)

**사실관계**

<b>요청자</b>	Hisense USA Corporation (대리인: Wiczer Sheldon & Jacobs, LLC)	
<b>제품</b>	<b>제품명</b>	• 이동식 에어컨 장치 AP 시리즈 (모델명: AP0522R1W, PAC06, MAP06, AP0722CW1W, AP1022CW1G)
	<b>구성</b>	• 팬 서브 어셈블리, 새시 및 금속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콘덴서, 증발기, 필터, 바퀴 등
	<b>용도</b>	• 중앙 냉방이 없는 가정, 아파트 및 기타 건물에서의 냉방에 사용

**제조과정**



**상세과정**

1. 중국산 콘덴서, 증발기, 모터 등 일부 부품들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 제조과정
  - (1)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
    -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루버, 공기 배출구, 필터 프레임 등을 제조
    - 팬 허브와 블레이드 용접 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팬 서브 어셈블리 완성
  - (2) 팬 서브 어셈블리를 중국산 모터에 연결
  - (3) 새시 및 기타 금속 부품, 기타 플라스틱 부품 제작
  - (4)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하여 입·출구 튜브 제작 후 중국산 콘덴서 및 증발기에 용접
  - (5) 각 장치 최종 조립
    - 콘덴서, 증발기, 바퀴, 모터 커버, 수위 스위치 등을 새시에 결합 후 나사로 고정
    - 중국산 토출·흡입 튜브 용접 후 질소 주입
    - 상·하부 팬, 보호망, 공기 배출구 설치 및 배선 연결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전기 박스, PCBA, 디스플레이, 필터, 리시버 설치 후 진공 및 냉매 충전
  - 디스플레이 패널을 PCBA 및 전면 패널에 배선 연결
  - 태국에서 제조된 패널, 상·하부 필터, 필터 커버 설치 및 나사로 고정
3. 시험 및 검사 후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사례** 콘덴서와 증발기를 중국에서 제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하여 입·출구 배관과 연결함. 입·출구 배관은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한 후 브레이징으로 증발기와 콘덴서의 끝단에 접합하여 형성됨. 증발기는 새시에 맞도록 장착하기 위해 벤딩 기계에 투입됨

**판정** 중국산 컴프레서와 미완성 콘덴서 및 증발기로 구성된 냉방 유닛은 태국에 수입될 당시 미완성 상태이므로 에어컨의 본질로 간주 될 수 없다고 판정함

#### 판정 결과

- ☐ 중국산 부품과 태국산 부품을 이동식 에어컨으로 최종 조립하는 공정은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 다만, 에어컨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냉각 유닛으로 부품의 상당수가 태국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하는 공정으로 미완성 상태의 중국산 콘덴서와 증발기가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현행 제301조 적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의 원산지는 태국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에어컨의 핵심 구성요소는 냉방 유닛이며 콘덴서 및 증발기는 냉방 유닛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해당 부품들이 미완성 상태로 수입되어 다른 부품들과 함께 냉방 유닛으로 완성되는 경우, 최종 냉방 유닛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2263 (2021.11.12.), <https://rulings.cbp.gov/ruling/N322263>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https://rulings.cbp.gov/ruling/N31684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 스마트 워치

### 요약

사례명	<b>스마트 워치</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2417 (2022.02.23.)
사실관계	대만에서 SMT 공정을 통해 생산된 2개의 PCBA를 중국으로 수입한 뒤, 중국에서 PCBA와 다른 부품들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포장하여 최종제품인 스마트 워치 생산 * SMT공정: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표면에 실장·접합하는 표면실장 공정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P는 다음을 이유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은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수입된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li> <li>-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에 대해 CBP는 일반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의 개발 및 업로드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li> </ul> </li> <li>• 최종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워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이러한 PCBA를 생산하기 위해 대만에서 수행된 공정은 명칭, 성질 및 용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 <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 </ul>

II 판정사례<sup>2)</sup>

**사 례 명** [스마트 워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2417 (2022.02.23)

**사실관계**

<b>요청자</b>	비공개 (대리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b>제품명</b>	• 스마트 워치	
<b>제품 구성</b>	• 메인 로직 보드(MLB), 센서 보드, 디스플레이, 마이크, 스피커, 햅틱 모듈, 배터리, 실리콘 손목밴드 등	
<b>용도</b>	• 광범위한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스마트 통신 장치	

**제조공정**



**상세공정**

1. 대만 제조공정

- (1) 2개의 PCBA(메인 로직 보드, 센서 보드) 생산을 위해 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대만으로 수입 및 조달
- (2) SMT 공정을 통해 메인 로직 보드 생산(약 3시간 소요)
  - CPU, 플래시 메모리 칩, Wi-Fi 및 블루투스 통합 회로, 고도계, 관성 측정 장치, 다양한 저항기, 서미스터, 커패시터, 인덕터, 집적 회로를 포함한 약 680~70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산)
- (3) SMT 공정을 통해 센서 보드 생산(약 1~2시간 소요)
  - 심박수 모니터,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를 포함한 약 50~6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중국산)

2. 완성된 2개의 PCBA를 포장하여 중국으로 수출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3. 중국 제조 공정

## (1)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중국으로 수입

부품명	원산지	부품명	원산지
마이크 부품	중국산	AMOLED 셀패널	대만산
햅틱 모듈	중국산	터치 컨트롤러	대만산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산	기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부품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본체 외장	중국산		
크래들	중국산	스피커	독일, 몰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
실리콘 손목밴드	중국산	PCBA	대만산

## (2)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수행(약 2~3시간 소요)

- 특정 모듈의 조립 및 이러한 모듈을 사전에 조립 및 제작된 부품과 결합
- 운영 체제가 포함된 펌웨어 업로드(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 사용)

## 4.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a)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a))』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관련 법령  
및 판례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및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이때 성질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완성품의 본질(essence)을 검토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30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사례** Fitbit 웨어러블 전자 스마트 기기 사례

**판정** Fitbit 기기의 고유하고 완전한 기능은 여러 전자부품이 PCBA에 통합 및 탑재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며, 개별 전자부품들은 SMT 공정을 통해 PCBA에 통합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진동 모터, 디스플레이, 손목 밴드 등이 포함된 하우징에 PCBA를 부착하는 최종 조립 공정은 PCBA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SMT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임

- 기기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판정 결과

☑ CBP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공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최종 조립**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나사 조임, 접착, 가열, 롤링, 프레스, 고정 등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 시간 또한 대만에서의 PCBA 제조 공정에 비해 짧으며, 특히, 마이크, 스피커, PCBA와 같은 구성품은 조립 후에도 여전히 고유한 명칭 및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로드** CBP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업로드는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본 사안의 경우 펌웨어가 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이므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이와 더불어, HQ H302801 사례를 인용하면서 최종 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위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에서 PCBA가 생산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대만이라고 판정함

- **명칭** 대만에서는 약 700개 이상의 부품이 SMT 공정을 통해 두 개의 PCBA에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전자부품들의 명칭은 메인 로직 보드 혹은 센서 보드로 변경됨
- **성질**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며, 데이터 수집 및 교환, 사용자 운동 및 활동 추적 등 스마트 위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함
- **용도**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기 전에는 독립적이며 일반적인 용도의 품목으로 여러 장치에 사용될 수 있으나, 2개의 PCBA로 통합되면서 스마트 위치에 전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 전환 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 판정 결과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SMT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대만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 최종제품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대만임

## III 시사점

- CBP는 최종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를 스마트 위치의 핵심 부품으로 판단하므로, PCBA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최종제품의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2417 (2022.02.23.), <https://rulings.cbp.gov/ruling/H322417>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01>
-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8234>
-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39>
-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https://rulings.cbp.gov/ruling/558868>

-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https://rulings.cbp.gov/ruling/735027>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 요약

사례명	<b>영상 관리·감시 시스템</b>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7997 (2023.04.10.)
사실관계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에서 주문 관리, 하드웨어 제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품질 관리 및 보증,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 하여 최종 제품인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여러 국가에서 주요 부품들이 조달되고 조립이 이루어졌으나 어느 조립 공정도 지배적이지 않았음</li><li>• 미국에서 서브 어셈블리들과 부품들을 VMS로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최종 조립 공정에서 비로소 VMS가 완성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li></ul>
근거법령	- Title III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 2511–2518)

I 판정사례<sup>3)</sup>

**사 례 명**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7997 (2023.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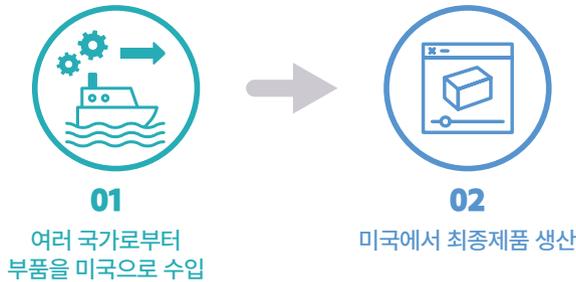
**사실관계**

**요청자** Security Lab Inc. (대리인: Geme Rosen Law Group)

**제품명**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구분	부품명(원산지)	
<b>제품</b>	<b>구성</b>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시(대만)</li> <li>• 마더보드(중국산)</li> <li>• 중앙처리장치(CPU)(코스타리카,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산)</li> <li>•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싱가포르 또는 태국산)</li> <li>• 광학 드라이브(중국산)</li> <li>• 메모리 모듈(중국산)</li> <li>• 그래픽 카드(중국산)</li> <li>• 알람 보드(중국산)</li> <li>• 직렬 ATA 컨트롤러(ATA Controller)(대만산)</li> <li>•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 컨트롤러(RAID Controller)(싱가포르산)</li> <li>• 전원공급장치(PSU)(중국산)</li> <li>• 컴퓨터 팬(중국산)</li> <l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대만산)</li> <li>• 네트워크 카메라(대만, 한국 또는 중국산)</li> <li>•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중국산)</li> </ul>	
			소프트웨어	Security Lab, Microsoft Window 등(미국산)
			기타 부품	케이블, 브래킷, 베젤, 나사, 스트랩 등(다국적)
			용도	• 영상 감시 작업 수행 및 관리용

**제조과정**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상세공정

1. 다양한 국가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
2. 미국 제조공정
  - (1) 주문 관리
    - 고객 주문을 접수 후 작업 지시서를 발행, 필요한 자재명세서(BOM)를 식별
  - (2) 하드웨어 제조(최대 30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 전동 드라이버, 글루, 타이 스트립 등을 사용해 하드웨어, 서브 어셈블리, 부품 조립
  - (3)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구성 및 관리(18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 프로그래머, 개발자, 테스터,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주문자 맞춤(build-to-order)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및 코딩하여 완성된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합, 설치 및 구성
  - (4) 품질 관리 및 보증(14단계의 공정, 약 60분 소요)
    - 영상·오디오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 검사를 포함한 품질 점검과 시험을 수행
  - (5)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6단계의 공정, 약 15분 소요)
    - 완성된 VMS의 사진 촬영, 새시에 위조 방지 스티 부착 등 마감 공정 수행

## 쟁점사항

- ✓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1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19 U.S.C. § 2511~2518)』에 따르면, 물품이 특정 국가 또는 기관의 제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국가 또는 기관에서 유래한 자재로 구성된 경우, 해당 물품이 상업상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전혀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자재가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성질의 변화를 인정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구성 부품의 특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어야 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Ct. Int'l Trade 2016)

- CBP는 부품의 생산 또는 조립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한 국가의 작업도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장소를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최종 조립 및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 위성전화기의 원산지판정

**판정**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치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나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을 포함한 오실로스코프가 싱가포르에서 조립되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된 경우 원산지판정

**판정**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에서의 최종 조립이 제품을 완성시켰기에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주요 부품들이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VMS 제조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조립을 통해 개별 부품들이 VMS로 최종 완성되므로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최종 조립을 통해 VMS가 완성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미국임

II 시사점

• 어느 한 국가의 제조공정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할 수 있음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7997 (2023.04.10.), <https://rulings.cbp.gov/ruling/H327997>
-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https://rulings.cbp.gov/ruling/H170315>
-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203555>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프린터

요약

사례명	<b>프린터</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4677 (2023.04.21.)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작된 프린터 트랜스포트를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PCBA 생산, 미국에서 설계된 펌웨어(필리핀 자회사에서 개발) 설치, 최종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프린터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멕시코산 PCBA를 유일한 핵심 기능 부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펌웨어 또한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에 멕시코 내 작업 과정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됨</li><li>• 최종제품의 주요 특성은 프린터 트랜스포트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여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li></ul>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4)</sup>

사 례 명 [프린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4677 (2023.04.21.)

사실관계

요청자 Lexmark International, Inc. (대리인: Thompson &amp; Associates, PLLC)

제품명 • Lexmark's MS/MX and CS/CX series printers

제품	구성	구성품
	프린터 트랜스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임</li> <li>• 커버</li> <li>• 퓨저(fuser)</li> <li>• 레이저 스캐닝 유닛(LSU)</li> <li>• 조작 패널(operator panel)</li> <li>• 스캐너(scanner)</li> <li>• 전원 공급 장치(PSU)</li> <li>• 토너 카트리지</li> </ul>
	PC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B</li> <li>• 트랜지스터(transistor)</li> <li>• 저항기(resistor)</li> <li>• 집적회로(IC)</li> <li>• 커패시터</li> <li>• 펌웨어</li> <li>• 시스템 온 칩(SOC)</li> </ul>
	기타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li> <li>• 팬</li> <li>• 센서</li> <li>• 모터 등</li> </ul>

용도 • 흑백 및 컬러 복합기와 프린트용

## 제조공정



01

중국에서 프린터 트랜스포트  
제작 후 멕시코로 수출

02

멕시코에서 PCBA 생산  
및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상세공정**

1. 중국에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여 프린터 트랜스포트(printer transport) 제작 후 멕시코로 수출
2. 멕시코에서 Surface Mount Technology(SMT) 및 Pin Through Hole Technology(PTH)를 활용하여 PCBA 제작
  - 얇은 유리섬유나 복합 에폭시 등으로 제작된 PCB에 전도 경도가 에칭 및 인쇄되고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생산된 트랜지스터, 저항기, 집적 회로 등을 부착
  - 미국에서 설계(필리핀 자회사에서 개발)된 펌웨어를 PCBA에 설치
3.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
  - 케이블을 사용하여 PCBA와 프린터의 다른 부품들을 연결
  - 토너 카트리지 설치
  - 일부 고급형 프린터는 기계식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수행
4. 포장 및 팔레타이징 후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숙련된 기술, ⑤작업의 디테일, ⑥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내용** 신발 갑피를 밑창에 부착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갑피는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라고 판시함

##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례 및 판정을 인용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8467 (2008)*

**사례**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 필리핀에서 다국적 부품을 사용하여 18개의 유닛 제작, 이후 해당 유닛을 일본으로 수출한 뒤, 일본에서 시스템 제어 보드, 엔진 제어 보드, OPC 드럼, 토너 카트리지를 자체 생산하여 해당 유닛에 장착, 일본산 펌웨어 탑재

**판정** **핵심 부품과 펌웨어**가 일본산이며 일본에서 수행된 제조 작업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다 판단, 프린터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19519 (2013)*

**사례** 멕시코에서 중국산 부품을 포함한 모든 부품을 최종 조립하여 레이저젯 프린터와 팩스 제조

**판정** 멕시코에서의 조립이 충분히 복잡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87548 (2018)*

**사례** 흑백 레이저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 일본산 메인 PCBA와 펌웨어, 베트남산 용지 공급장치, 퓨저, 감광체, 토너 카트리지를, 조작 패널을 미국에서 조립 및 설치

**판정** 베트남과 미국에서 수행된 비교적 단순 작업과 달리 **일본산 PCBA와 펌웨어**가 프린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판단하여 흑백 레이저 프린터의 원산지를 일본으로 판정

### 판정 결과

- ☐ 멕시코산 PCBA를 유일한 핵심 기능 부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펌웨어 또한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에 멕시코 내 작업 과정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됨
- ☐ 최종제품의 주요 특성은 프린터 트랜스포트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여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중국산 프린터 트랜스포트가 프린터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라 판단되기에 프린터의 원산지는 중국임

## 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프린터의 원산지를 판정한 CBP의 인용 사례를 종합해보면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는 대체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구성요소별로 각각 생산국이 다른 경우에는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산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4677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H304677>
- CBP Ruling HQ H018467 (2008.01.04.), <https://rulings.cbp.gov/ruling/H018467>
- CBP Ruling HQ H219519 (2013.08.03.), <https://rulings.cbp.gov/ruling/H219519>
- CBP Ruling HQ H287548 (2018.03.23.), <https://rulings.cbp.gov/ruling/H28754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블라인드

요약

사례명	<b>블라인드</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242 (2023.09.27.)
사실관계	중국에서 일부 생산 및 가공한 부품(슬리팅 및 도장 작업한 대만산 알루미늄,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한 후, 대만에서 알루미늄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매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를 제작한 뒤 최종 조립하여 블라인드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매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 성질,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sup>5)</sup>

**사 례 명** [블라인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242 (2023.09.27.)

**사실관계**

요청자	All Strong Industry USA, Inc.	
제품명	• 베네시안 블라인드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 슬랫</li> <li>• 상단 및 하단 레일</li> <li>• 코드리스 매커니즘</li> <li>•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li> </ul>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대만산 알루미늄 코일을 슬리팅 및 도장
  -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 생산
2. 대만으로 부품 수입
3. 대만 제조공정
  - 알루미늄을 절단 및 성형하여 슬랫 제작
  -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상단 및 하단 레일 제작
  - 중국산 플라스틱 박스 및 부품을 대만산 금속 스프링과 조립하여 코드리스 매커니즘 제조
  - 대만산 금속 브래킷 및 알루미늄 나사와 중국산 플라스틱 손잡이를 포함하여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 제작
  -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4. 대만산 골판지 상자에 포장 후 미국 수출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메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 성질,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 Ⅱ 시사점

-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블라인드와 같은 특정 상업적 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242 (2023.09.27.), <https://rulings.cbp.gov/ruling/N33524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요약

사례명	<b>합금 알루미늄 빌렛</b>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2638 (2024.05.13.)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스크랩 등 다국적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하고 합금 첨가제를 혼합하여 합금화를 수행한 후 주조, 균질화 등 여러 제조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인 합금 알루미늄 빌렛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은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p> <table border="1"> <tr> <td>명칭 변화</td> <td>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td> </tr> <tr> <td>성질 변화</td> <td>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td> </tr> <tr> <td>용도 변화</td> <td>-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td> </tr> </table>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I 판정사례<sup>6)</sup>

**사 례 명**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2638 (2024.05.13)

**사실관계**

<b>요청자</b>	HMA, Inc. (대리인: Barnes, Richardson & Colburn LLP)	
<b>제품명</b>	• 합금 알루미늄 빌렛	
<b>구성</b>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알루미늄 스크랩 • 합금 첨가제(실리콘,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b>제품 용도</b>	• 상업용 건축·건설, 트럭·트레일러·군용 차량 제조 등에 사용	
<b>원재료 HTSUS</b>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제7601.10호) • 알루미늄 스크랩 (제7602.00호) • 실리콘 (제2804호), 구리 (제7404호), 철 (제7205호), 마그네슘 (제8104호), 망간 (제8111호), 티타늄 (제8108호), 크롬 (제8112호)	
<b>완제품 HTSUS</b>	• 7601.2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멕시코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
  2. 예열오븐(pre-heat oven)과 전자 포트(electronic pot)를 사용한 교반
  3. 탈가스 포트(degassing pot)를 사용한 불순물 및 수소 가스 제거
  4. 주조기에서 빌렛 성형
  5. 연속식 및 배치형 균질로(homogenizing furnace) 구역에서 응력 제거 열처리
  6. 빌렛 절단기로 절단 및 표면 연삭
  7. 초음파 결함 검사 및 분광 분석

6)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8. 최종 균질성 검사 후 포장

9. 미국 수출

시나리오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스크랩	합금 첨가제
1	- 멕시코산, 캐나다산 혹은 양국 혼합	X	
2	- 중국산 60% - 한국산 20% - 호주산 20%	X	- 한국산 실리콘, 구리 - 중국산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3	- 한국 또는 호주산 60% - 캐나다산 10%	멕시코산 30%	

## 쟁점사항

- ✓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또는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릿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정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71341 (1983.08.24.)*

**사례** 수입된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를 변형시켜 생성된 용융 알루미늄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함

**판정** 최종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은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며, 관련 업계에서도 원재료와 최종 제품을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금 첨가물의 추가에 의해 용융 알루미늄이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 사례**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를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과 함께 한국에서 용융 및 혼합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
- 판정**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있는 공정으로 판단

**판정 결과**

☑ 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명칭 변화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성질 변화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용도 변화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결론**

- ✓ 실질적 변형의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에서 알루미늄 빌렛의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232조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렛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으로 보고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2638 (2024.05.13.), <https://rulings.cbp.gov/ruling/H332638>
-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https://rulings.cbp.gov/ruling/N30143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 음식물 처리기

### 요약

사례명	<b>음식물 처리기</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3319 (2024.05.15.)
사실관계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등 10단계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음식물 처리기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멕시코에서의 제조공정에서 중국산, 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되어 서브 어셈블리로 변환되고, 이를 조립하여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음식물 처리기가 생산되는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7)</sup>

**사 례 명** [음식물 처리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3319 (2024.05.15.)

**사실관계**

요청자	Whirlpool Corporation (대리인: Cassidy Levy Kent USA (LLP))		
제품명	• 전기 구동식 음식물 처리기 4종 (모델명: SKU 80499A-ISE, 80500A-ISE, 80499-ISE, 80500-ISE)		
제품 구성	원산지	구성 요소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중국	모터, 관통볼트, 컨테이너 본체 실, 배플이 포함된 마운팅 개스킷, 리벳, 테일 파이프 나사, SKU 80499A-ISE 및 80500A-ISE용 전원 코드 등	45~49%
	멕시코	컨테이너 바디/분쇄 챔버, 모터 커버, 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등	29~31%
	미국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배수 서브 어셈블리, 바디 플랜지, 플라스틱 마개, 실란트, 고정식 분쇄 링 등	22~24%
용도	• 음식물 처리용		
완제품 HTSUS	• 8509.80.2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
  2.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부품 성형, 프레스 가공, 고정, 나사 체결, 검사 등 10단계의 공정 수행
    - 고강도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컨테이너 바디와 모터 커버 제작
    -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 제작 및 모터의 샤프트에 부착

7)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모터와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를 모터 커버에 삽입
  - 고정식 분쇄 장치를 컨테이너 바디에 부착 및 통합
  - 회전식 분쇄부, 모터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 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
  - 조립된 서브 어셈블리에 진공, 누출, 전기 테스트
  - 바디 플랜지와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조립
  -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모터/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배관 키트를 함께 조립
  - 완성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제품 및 안전 테스트
3.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C.S.D. 90-57*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조립 공정을 검토함에 있어, CBP는 조립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본질(very essence)을 부여하는 부품의 원산지를 함께 고려함

- 일반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제품에서는 모터가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며, 모터의 원산지는 모터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국가에 따라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및 *NY N305251 (2019.08.01.)*

- 더불어,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국가에서 수행되는 서브 어셈블리 공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 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사례** 미국산,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산 부품들과 다양한 부품 또는 서브 어셈블리로 가공된 뒤, 최종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로 조립됨

원산지	구성 요소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중국	배수 하우징, 모터 스테이터, 엔드 벨, 아마추어, 턴테이블, 엘라스토머, O-링, 너트, 각종 라벨, 플라스틱 절연체, 검사 플레이트	50%
미국	보어 베어링, 카본 브러시, 와이어 캡, 파이버 오일, 턴테이블 접착제	4%
캄보디아	배수 서브 어셈블리, 스냅 및 락 마운트, 싱크 플랜지, 스냅 지지 링, 스플래시 가드, 지지 마운트 링, 스토퍼 및 스토퍼 쉘, 호퍼, 하부 쉘, 포장재, 일부 라벨 등	45%

**판정** 여러 하위 조립품 및 부품들은 모두 정밀하게 제조되고 조립되기 전까지는, 음식물 처리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조립 과정에서 결합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음식물 처리기로 완성된다고 판정함

## 관련 법령 및 분석

### 판정 결과

☑ HQ H303529 사례 및 NY N316794 사례와 유사하게 본 사안에서 중국산 모터는 멕시코에서의 조립 과정을 거치는 동안 멕시코 및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들과 결합되어 음식물 처리기로 변형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갖는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II 시사점

- 일부 주요 부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이어도 여러 부품들을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서브 어셈블리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해당 공정이 수행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음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3319 (2024.05.15.), <https://rulings.cbp.gov/ruling/H333319>
-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https://rulings.cbp.gov/ruling/H313371>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1679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8

## 금속 머리띠

### 요약

사례명	<b>금속 머리띠</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3597 (2025.10.09.)
사실관계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 리본을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부품들을 캄보디아산 헤드밴드, 빛과 나사로 체결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금속 티아라 머리띠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속 티아라 머리띠에 기본적인 성질을 형성하는 것은 캄보디아산 금속 헤드밴드와 플라스틱 빛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헤드밴드와 빛의 생산국인 캄보디아임</li><li>•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이 캄보디아에서 부착되더라도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li></ul>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sup>8)</sup>

**사 례 명** [금속 머리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3597 (2025.10.09.)

**사실관계**

요청자	Moimui Creations Limited	
제품명	• 금속 티아라 머리띠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 티아라 본체 (중국산)</li> <li>• 아크릴 보석 (중국산)</li> <li>• 리본 (중국산)</li> <li>• 헤드밴드 (캄보디아산)</li> <li>• 플라스틱 빗 (캄보디아산)</li> <li>• 나사 (캄보디아산)</li> </ul>	

### 제조공정



**01**

중국산 부품들을  
캄보디아로 수출



**02**

캄보디아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



**03**

미국 수출

- 상세공정**
1.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 리본을 캄보디아로 수출
  2. 캄보디아에서 라인스톤(rhinestones) 선별하여 지정된 위치에 접착
  3. 티아라 본체의 홈/패턴에 컬러 에폭시 도포
  4. 티아라 본체 부품을 헤드밴드에 나사로 체결
  5. 빗살을 머리띠 끝부분에 접착한 후 리본으로 감아 추가 고정
  6. 품질 검사 후 필요 시 수정
  7. 티아라 헤드밴드 포장 및 라벨 부착
  8. 선적용 박스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제조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캄보디아산 금속 헤드밴드와 플라스틱 빗이 완성된 티아라 머리띠의 기본적인 성질을 형성하고, 중국산 부품이 캄보디아에서 부착되더라도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되지 않으므로 금속 티아라 머리띠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결론**

✓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부품의 생산국인 캄보디아가 금속 머리띠의 원산지임

**Ⅲ 시사점**

- 머리띠와 같은 액세서리의 경우, 인체에 착용 가능하도록 하는 장착부가 주요 핵심 구성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구성 요소가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3597 (2025.10.09.), <https://rulings.cbp.gov/ruling/N353597>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 대나무 선반 패널

### 요약

사례명	<b>대나무 선반 패널</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280 (2025.10.21.)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작한 대나무 블랭크 데크와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후, 베트남에서 현지 조달된 재료들과 함께 절단, 연마, 코팅 등의 조립 공정을 수행하여 대나무 선반 패널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이 대나무 선반 패널로서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지게 되므로 해당 공정이 수행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sup>9)</sup>

**사 례 명** [대나무 선반 패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280 (2025.10.21.)

**사실관계**

요청자	Forest Products Distributors	
제품	제품명	• 대나무 선반 패널 (품목번호: BAMB30125MI)
	구성	• 대나무 블랭크 데크 (중국산) • 금속 나사 인서트 (말레이시아산)
	용도	•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책장 구성품 및 기타 가구용
	완제품 HTSUS	• 9403.99.2080

**제조과정**



**상세공정**

- 중국에서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 대나무 줄기 수확
  - 대나무 줄기를 얇은 조각으로 절단 후 가압실에서 건조하고 품질 및 색상별 분류
  - 대나무 조각 압착 및 접착하여 얇은 패널 제작
  - 여러 얇은 패널을 압착 및 접착하여 더 커다란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 중국산 대나무 데크,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 베트남으로 선적 및 수출
- 베트남에서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목재 스테인, 접착제, 에폭시 수지, 포장재 현지 조달
- 베트남에서 미완성·미조립·미마감 상태 목재 가구 부품으로 제작
  - 중국산 대형 대나무 블랭크 데크 하나를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CNC)를 사용하여 여러 선반 부품으로 치수 절단, 성형, 연마, 옛지 프로파일링

9)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2) CNC 기계로 6개의 구멍을 뚫고 금속 나사 인서트 설치
  - (3) 대나무 패널 선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수작업으로 연마
  - (4) 대나무 패널 선반의 앞면과 뒷면 검사 후 추가 연마로 결함 제거
  - (5) 자외선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분사 후 대나무 패널 선반 공기 건조
  - (6)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갈색, 진한 갈색, 또는 검정색 착색 코팅 도포
  - (7)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최종 폴리우레탄 탑코트 도포
  - (8) 도포 불량이나 기포가 발견될 경우 수리 및 추가 폴리우레탄 도포
5. 세척, 포장, 라벨링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판정 결과**

- ☑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은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고 완성된 목재 가구 선반 패널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갖게 되므로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II 시사점**

- 블랭크 데크는 그 자체로 선반 용도의 패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반가공품을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을 수 있음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28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28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 요약

사례명	<b>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160 (2025.10.21.)
사실관계	중국 또는 독일에서 생산된 소재(폴리우레탄 필름, 초흡수성 섬유, 부직포, 폴리우레탄 폼, 실리콘 메쉬, 이형 필름)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라미네이팅, 절단,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베트남에서 중국산 또는 독일산 소재를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를 제작하고 각 층을 결합할 때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제조공정의 수행국인 베트남이 원산지임
근거법령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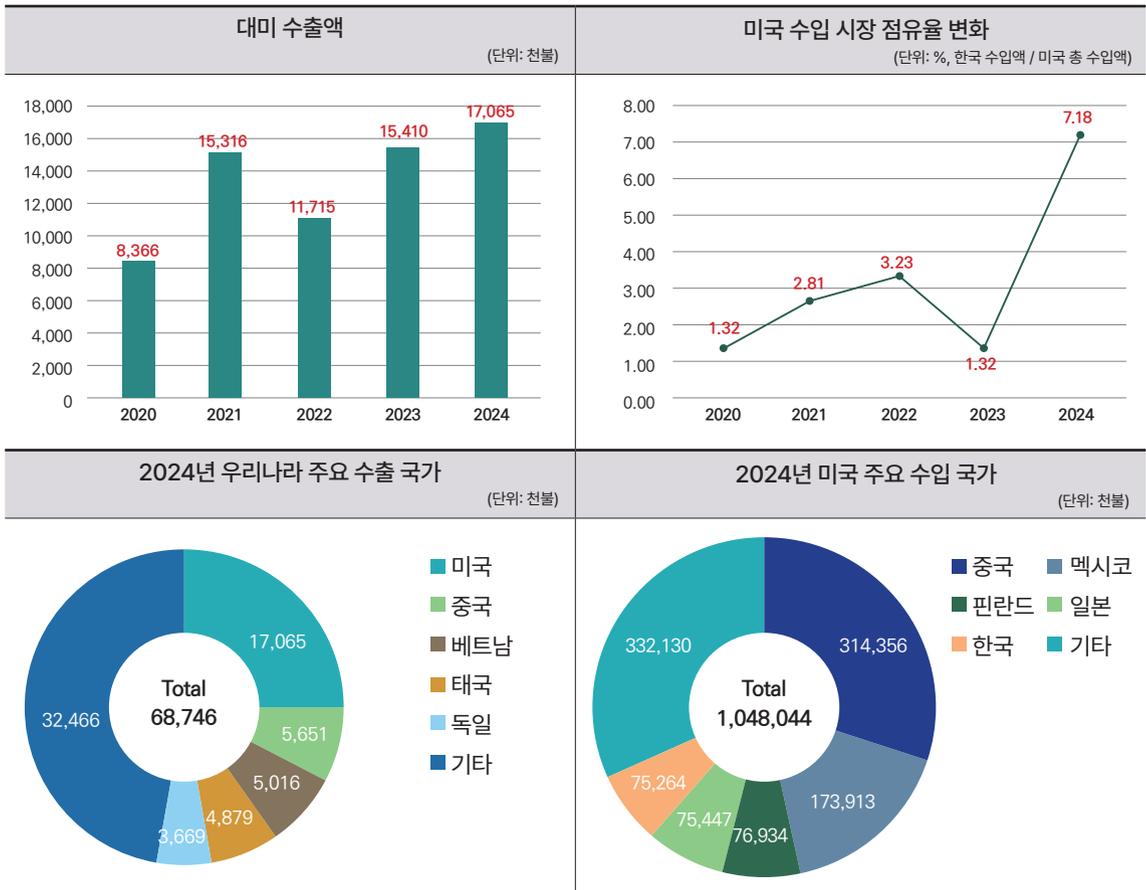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3005.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시장정보

제3005.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160 (2025.10.21.)

**사실관계**

요청자	Winner Medical (대리인: Liang + Mooney, PLLC)	
제품	제품명	• 테두리 부착형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구성	• 폴리우레탄 필름 • 초흡수성 섬유(SAF) 층 • 부직포 층 • 폴리우레탄 폼 • 실리콘 메쉬 층 • 이형 필름
	용도	• 상처를 덮고 습윤 치유 환경 제공
	완제품 HTSUS	• 3005.10.500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에서 폴리우레탄 필름,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이형 필름 제조
2. 중국 또는 독일에서 실리콘 메쉬 제조
3. 6개 층 모두 베트남으로 운송 후 최종 조립
  - (1)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층을 풀고 열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 제작
  - (2) TPU, 드레싱 코어, 실리콘 메쉬 층, PE 이형 필름을 풀고 라미네이팅
  - (3) 규격에 맞는 길이와 폭으로 절단
  - (4)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및 소매용 라벨과 함께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 중국산 또는 독일산 원자재는 베트남에서 결합될 때 테두리가 있는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해당 제조공정을 수행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베트남임

## Ⅲ 시사점

- 다중 소재로 이루어진 폼 드레싱의 경우, 각 층의 소재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생산될지라도 이를 라미네이팅 하여 결합하는 등의 제조공정이 단일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16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16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ORIGIN CASE

Vol. 9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